

## 【별표1】 공단 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3.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를 받는 사람